경북도청이전신도시 B4-2BL “우방 아이유쉘” 입주자 모집공고

※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이외에 청약통장 가입관련을 방문하여 인터넷청약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받으시기 바랍니다.
※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4. 02. 20 (목)입니다. [무주택 기간, 나이,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 임.]
※ 본 공급되는 분양주택은 「주택법 제3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적용 주택입니다.
※ 해당지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에 따라 2이상의 시 · 군이 행정구역에 걸쳐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경북도 동일 주택건설지역으로 보며, 이 지역은 「주택법」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투기과열지구 입니다.
※ 해당지역은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조 제1항에 의거 지역별 입주 우선순위에 따라 청약이 가능 합니다.
※ 해당지역은 「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17조의 4에 규정된 도청이전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 에게 주선공급해서, 신청장수 미달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하므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17조의 4에 규정된 도청이전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 에게 주선공급하며, 신청장수 미달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하므로 (www.apt2you.com) 에 청약통장을 개설 하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
※ 해당지역은 「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17조의 4에 규정된 도청이전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 에게 주선공급해서, 신청장수 미달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하므로 (www.apt2you.com) 에 청약통장을 개설 하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
※ 청약신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청약신청 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
※ 청약통장은 「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 가입관련을 방문하여 인터넷청약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받으시기 바랍니다.
※ 청약신청은 「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 가입관련을 방문하여 인터넷청약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받으시기 바랍니다.
※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이외에 청약통장 가입관련을 방문하여 인터넷청약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받으시기 바랍니다.
※ 남은 공급세대는 주택은 「주택법 제3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「주택법」 제41조의 2 및 「주택법시행령」 제54조의 2 규정에 의거 분양가격 공시 후 최초로 주택공급 개시일이 가능 합니다.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3조에 의 거 분양가상한 제적용주택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택법 시행령 제54조의 2 규정에 의거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에 따른 분양가격의 범위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양가격의 범위에서 당해 주택의 분양가격을 결정하여 입주자에게 통지하고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분양가격을 통지하는 때에 분양가격의 산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※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「주택법」 제39조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.
※ 본 주택은 「주택법」 제39조 및 「주택법시행령」 제74조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.
※ 남은 공급세대는 주택은 「주택법」